

#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24
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에 의거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장학기금조성을 위하여 운용되던 평창장학회 기금출연금을 재단법인평창장학회에 직접 출연하기 위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일반회계예산에서 평창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2조)
- 나.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에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3조)
- 다. 기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규정 (안 부칙제2항)
- 라.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를 폐지함 (안 부칙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기협외 완료
- 다. 입법예고 : 2005. 4. 22 ~ 5. 12 실시결과 의견없음

## 재단법인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평창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장학기금의 출연)** 군수는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재단법인평창장학회(이하 “장학재단”이라 한다)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**제3조(결산보고서 요구)** 군수는 장학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의 결산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
- ③(다른조례의 폐지) 「평창군장학기금설치및관리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5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